

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5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7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13일, 전철수 의원 외 24명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1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: 전철수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 전체가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터미널, 차고지, 노상주차장, 학교위생정화구역 등 2,649개소는 중점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.
- 현재 자동차의 공회전허용시간은 2003년 조례제정 당시의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전하여 공회전허용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## 나. 주요골자

- 공회전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,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℃ 이상이거나 영상 5℃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 영 배)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차종에 관계없이 2분으로 강화하고 대기온도가 5℃미만이거나 25℃이상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현재 서울시내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되고 있으며, 터미널, 차고지, 주차장,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높다고 인정되는 곳은 중점공회전제한장소(2,649개소)로 지정되어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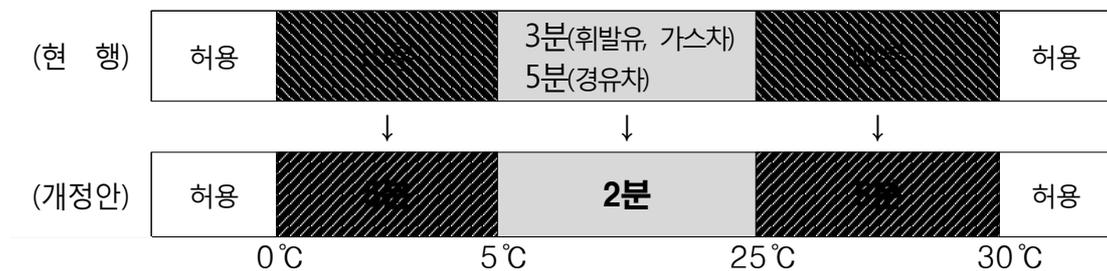
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.

〈표 1〉 서울시내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지정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터미널	차고지	노 상 주차장	주 요 경기장	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	기타
2,649	8	411	419	4	1,595	212

- 조례개정안에 따르면,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차종에 관계없이 2분으로 강화하고, 대기온도가 5℃미만이거나 25℃이상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<sup>1)</sup>.



〈그림 1〉 공회전제한 허용시간 비교

-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은 대부분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서, 공회전 제한시간 안내 등 계도 및 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, 금년 7월부터는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음.

1) 다만, 여름·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,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·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℃이하이거나 30℃ 이상이면 현재와 같이 공회전이 허용된다.

〈표 2〉 최근 3년간 공회전 점검 내역(자치구 포함)

(단위 : 대)

연도별	점검실적	조치결과		
		계 도	경 고	과태료부과
합 계	778,942	718,827	59,856	259
2014년 10월	251,334	223,616	27,601	117(512만원)
2013년	329,362	308,169	21,098	95(443만원)
2012년	198,246	187,042	11,157	47(208만원)

-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 공회전제한이 더욱 더 강화되면, 운전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으나, 조례의 시행일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여 충분한 사전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므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속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분 이내로”를 “5분 이내로”로 한다.

-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제한시간)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<u>다음 각 호의 시간을</u>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.</p> <p><u>1. 휘발유·가스 사용자동차: 3분</u></p> <p><u>2. 경유 사용자동차: 5분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℃ 이상이거나 영상 5℃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<u>10분 이내로</u> 한다. 다만, 대기의 온도가 0℃이하이거나 영상 30℃이상 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.</p>	<p>제4조(제한시간) ① -----</p> <p>----- <u>2분을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5분 이내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